

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·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16누○○○○○ [2심]	사건유형	자격면허등록인가
원고	□□□	피고	인천광역시○○교육지원청 교육장
판결선고일	[2심]2018. 11. 20. 각하판결	비고	[1심]2016. 4. 28. 원고승소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고는 2015. 6. 19. 피고에게 목적 '댄스스포츠학원업', 명칭 '00댄스스포츠 학원', 교습과정 '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, 모던 5종목'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음 ○ 피고는 2015. 6. 26. 원고에게 '댄스스포츠학원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도학원업으로 정하고 있다'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하였음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함) ○ 원고는 2015. 7. 27.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, 피고는 2015. 7. 29.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,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,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. 11. 23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음 		
주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 3.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피고가 2015. 6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의 설립·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.		
항소취지	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록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8. 10. 26.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처분을 직권취소함 ○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 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,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.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이에 따른 학원을 설립·운영하려는 원고에 대하여 학원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전제 아래,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		
결론	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경위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99조, 제105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